국민운동3단체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(행자부)

2012년~2016년 기간 중 4차례 선거에서 3단체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⇒ 총 29건 발생 (새마을 13건, 자유총연맹 9건, 바르게 7건)

- 단체 임원이 회원들을 모아놓고 ○○○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발언
- 단체 회장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추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개별 발송
- 단체 임원이 소속단체 회원들에게 단체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개별 발송
- 국민운동 3단체는 공명선거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단체명의의 "공명선거 참여 현수막" 게첩 행위
-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버스 임차료 제공
- 임원이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여 지지 발언
- 단체 임원이 타 단체의 특정 후보자 지지성명 보도자료 등을 함께 만들어 언론사 등에 배포
-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기고 단체 회합 활동 추진
- 단체 회장 명의로 특정 후보자 활동을 알리는 현수막 게첩행위 등

관계법조문

공 직 선 거 법

제103조(각종집회 등의 제한) ① 삭제<2010.1.25>

-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(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·새마을운동협의회·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)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.<신설 2005.8.4>
-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· 종친회·동창회·단합대회 또는 야유회,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 할 수 없다.<개정 2010.1.25>
- ④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.
- 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(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선거일 까지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.<신설 2004.3.12>

제19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상 제한사항

구 분	제 한 사 항
상시	 축사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선전 및 홍보, 공약사항 홍보 금지 (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지자체 실적홍보 금지 등)
	○ 소관사무등의 명목 여하 불문, 방송, 신문, 잡지나 그 밖의 광고 출연 금지
	○ 소속 직원·선거구민 대상 교육 기타 명목여하 불문,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
선거일 前 180일 부터	○ 정당·후보자가 설립·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
	ㅇ 법에 따른 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 행위(누구든지)
	화환·풍선·간판·현수막·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
	광고시설을 설치·진열·게시·배부하는 행위
	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
	◆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・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・판매 하는 행위
	•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행위 (누구든지)
선거일 前 90일 부터	○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 표시 저술영화기타 물품을 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
	광고할 수 없으며, 후보자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
	ㅇ 누구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
	○ 인터넷, 전자우편, 문자메세지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서 게재하는 행위
선거일 前 60일 부터	○정당의 정강·정책 주의·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 선전행위 금지
	○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, 선거사무소, 선거연락소를
	방문하는 행위 금지(창당대회, 합당대회, 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 제외)
	○통리·반장의 회의 참석행위 금지
	(※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·긴급한 민원 발생시는 가능)
	○교양강좌, 사업설명회, 공청회, 직능단체모임, 체육대회, 경로행사, 민원상담 기타
	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금지 (※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: 9종)
선거일 前 22일 부터 선거 기간	· 명목여하를 불문,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
	· 국민운동단체(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, 새마을운동협의회, 한국자유총연맹) 및 주민자치위원회
	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모임도 개최 금지
	·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금지
	· 정상적 업무 외에 출장행위 금지
	•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 시설 방문 행위 금지